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 審 査 報 告 書

1994. 12. 10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1월 24일 정 종태의원의 6인발의
- 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1994년 12월 10일<운영위원회 1차 회의상정의결>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배기환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, 단체와 그 임직원, 개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표창대상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기관, 단체와 그 임직원 및 개인,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외국인으로 함(안 제2조)
 -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의 3종으로 하며 의장단의 결정으로 패로서 수여가능토록 단서조항 규정(안 제3조)
 - 표창을 행할 경우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 -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 -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의회 의원으로 함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재한)

鄭鍾泰 議員外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을 검토한 바 구정과 지역발전과 의회에 공적이 있는 자의 표창규정을 돕으로 구정업무와 지역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적이며, 창조적으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표창규정안 제12조(공적심사위

원회설치 및 구성) 제2항에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각상임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(안)

의안 번호	273	발의년월일 : 1994. 11.
		발 의 자 : 정종태의원의 6인

1. 제안이유

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, 단체와 그 임직원, 개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표창대상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기관, 단체와 그 임직원 및 개인,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외국인으로 함(안 제2조)
- 나.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의 3종으로 하며 의장단의 결정으로 패로서 수여가능토록 단서조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표창을 행할 경우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라.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마.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의회 의원으로 함(안 제13조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창대상) ①표창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

저한 자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기관, 단체와 그 임직원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.

다만,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으로 한다.

단,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폐로서 수여할 수 있다.

제4조(표창권자) 이 규정에 의한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.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

제6조(상장)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,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. 다만,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회한 경우에 한한다.

제7조(감사장) 감사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
2.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

제8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

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시기)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추서)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.

제11조(공적심사) 표창은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.

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
다)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.

제13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이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주민 또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적을 위원회가 조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
③표창대상자 추천은 표창 수여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중표창의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
제15조(표창자 명부)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한다.

제16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